

# 대구광역시 서구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

## 1. 심사과정

- 발의일자: 2023. 3. 3.
- 발 의 자: 이주한 의원 외 4명
- 회부일자: 2023. 3. 6.(의안번호 제426호)
- 상정일자: 제241회 대구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 
제1차 사회도시위원회(2023. 3. 16. 상정 · 의결)

## 2. 제안설명 요지(제안설명: 이주한 의원)

### 가. 제안이유

-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노동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.

### 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정의, 책무, 다른 조례와의 관계를 규정(안 제1조~제4조)
- 기본계획의 수립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(안 제5조~제6조)
-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(안 제7조)
- 위원회의 설치 · 운영에 관한 사항(안 제8조)
-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(안 제9조)

### 3.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이진호)

#### 가. 법적 근거 및 타당성

- 본 조례안은 대구광역시 서구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권익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보육교직원의 인권을 증진하고 건강한 노동 환경이 조성되도록 지원함으로써 보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으로서, 보육교직원의 근로여건 개선 및 권익 보호에 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지닌 책임(「영유아보육법」 제4조제4항)을 이행하는 조치의 일환이라고 할 수 있음.

#### 나. 조문별 심사 항목 검토

-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, 보육교직원 지원에 관해서는 지도·명령 및 포상 수준에 머문 「영유아 보육 조례」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먼저 구청장의 책무(안 제3조)를 명확히 하고 인권침해 실태조사(안 제6조) 및 권익 보호 지원사업(안 제7조) 등을 펼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한 점이 이 조례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으며
-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(안 제5조)이나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 위원회의 설치·운영(안 제8조)에 관한 규정에서는 적정한 범위 내의 필요 사항을 명시하면서도 상위 계획에 포함하거나 관련 위원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여 실제 집행에 있어서 효율적인 운영이 가능하게 하였음.

#### 다. 종합 의견

- 최근 몇 년 사이에 보육교사의 열악한 노동환경 및 인권침해로 인해 빚어진 극단적 선택이나 소송 사례가 언론에 자주 보도되었는데, 우리구의 보육교직원 현황 및 어린이집 이용 인원(붙임 참조)을 놓고 볼 때 영유아 보육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본 조례안의 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으며,
- 각 조문을 전반적으로 검토한 결과, 보육교직원 권익 보호를 지원하는 데

필요한 사항이 적정하게 반영되었고 「영유아보육법」 등 관계 법령에 위배됨 없이 적정하게 구성된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: 생략

5. 심사결과: 원안가결